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2014년 2월 pp.189~216
한국세무학회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 분석*

최원석** · 윤성만***

<요 약>

본 연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경제의 개방도 그리고 법인세수의 용도가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시켰을 때, 납세자인 법인들의 조세순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수행할 때, 법인들의 탈세나 체납 등 세수확보정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이 곧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회여건 등에 따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외무역거래나 외국자본거래 등 개방경제하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양(+)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OECD 회원국의 명목 법인세율과 GDP 대비 법인세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여년간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지속적인 법인세율 평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GDP 대비 법인세수는 하향추세가 아닌 오히려 상향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율을 인하시키더라도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는 증거로 판단된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국가경제의 개방도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국가경제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해외법인의 유입, 외국자본의 투자 유입 및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법인세원을 넓혀 법인세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세수의 용도가 사회경제기반에의 투자가 아닌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수 증가 → 경제기반 확충 → 법인의 수익성 증대 →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순환구조

* 이 논문은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wschoi@uos.ac.kr, 02-6490-2101, 제1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 ysm6123@seoultech.ac.kr, 02-970-6440, 교신저자

에서 법인세수의 용도가 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대한 활성화 역할이 될 경제기반의 확충이라면 법인세율의 인상이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만일 법인세수의 용도가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용도라면 이는 단기적인 세수효과만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원의 범위를 축소시켜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법인세율, 법인세수, 세수확보정책, 경제개방도

I. 서 론

박근혜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삼고 있다(김진태와 신용준, 2013). 대표적인 정책으로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매년 27조원씩 임기 동안 총 1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원조달은 세금징수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예산절감과 세출구조 조정 71조원)과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조정(세제개편 48조원) 그리고 지하경제의 양성화(12조원) 등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재원확보에 한계를 느낀 현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¹⁾ 대표적인 조세정책 방향으로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²⁾

또한 최근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에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34개국 중 88.2%인 30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13개국) 또는 유지(17개국)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8년 23.9%에서

- 1) 2013년 1월과 5월 사이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세수증가를 주도했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법인세의 경우 상위 1%규모의 기업이 86%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이 속한 조선, 화학, 건설 및 해운 등 주요 업종이 201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 즉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납부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조 3,441억원이 감소한 19조 9,378억원에 불과하다(기획재정부, 2013).
- 2) 소득과세에서는 과세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의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하고, 소비과세측면에서 복지지출의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인과세체계에서는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재산과세측면에서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부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기획재정부, 2013).

2012년 23.3%로 0.6%p 인하되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증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야당권에서는 법인세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분명 법인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국내 경제상황이나 법인세수의 용도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Clausing, 2007 ; Laffer, 2004 등).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경제의 개방도나 세수의 용도에 따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세수확보차원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법인세율과 세수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법인세제에 대한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 연구설계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Ⅴ장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제Ⅵ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법인세율과 세수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Laffer Curve이론

Laffer Curve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 Laffer(1979)가 제안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이다. 일반적인 조세이론에서는 세율을 높일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Laffer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the arithmetic effect를 설명하는 동시에 일정 세율인 최적 부담률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함을 설명하였는데, 이 곡선을 Laffer Curve라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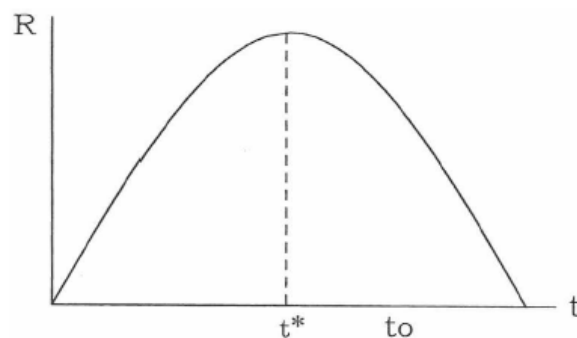
이외에 세율 변화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유인에 주는 영향을 통해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 the economic effect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세후 임금, 이자율 및 이윤 등이 높고 세율이 낮을수록 노동의욕, 저축의욕 및 투자의욕이 제고되어 결론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Laffer Curve자체만으로는 세율의 인하가 세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즉 <그림 1>을 보면, 세율이 0%일 때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할 유인은 있겠지만 정부의 세수가 없으며, 세율이 100%라면 경제주체들의 유인은

감소함에 따라 세원이 없으므로 정부수입은 여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세율이 낮은 상태일 때 어느 수준까지는 세수가 극대화되지만 적정세율인 t^* 을 넘어 그 이상까지 세율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유인이 감소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여 세율을 인상하여도 조세수입은 감소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Laffer는 적정세율인 t^* 보다 큰 영역을 금지영역(Prohibited Range)이라 하고 있다.

〈그림 1〉 Laffer Curve



Laffer Curve는 1970년대 미국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생산성하락으로 인한 경제침체현상으로 인해 고통 받던 때, 감세를 통해 미국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공급능력을 증대시키려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Laffer Curve를 통해 살펴보고 동시에 이러한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경제여건과 법인세수의 용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경제여건으로는 GDP 대비 대외무역 거래금액을 국가경제의 개방도로 정의하여 분석할 것이다. 폐쇄경제하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에는 비선형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이지만, 개방경제하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국내에서의 해외투자에 따른 법인세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수의 용도로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액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법인세수의 용도가 경제기반 시설이나 확충을 위한 재투자 용도인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효과가 지속적일 수 있다. 이 법인세수를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과연 법인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행동경제학이론 상 세율과 조세순응의 관계

대표적인 행동경제학 연구인 Boylan and Sprinkle(2001)은 소득유형에 따라 세율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자신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인식하게 되어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지만,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같은 주어진 소득(endowed income)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에 따라 납세순응이 증가하게 되고, 주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에 따라서 오히려 납세순응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05)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율인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교환공평성 인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여기서 교환공평성이란 세금을 납부한 대가로 받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공평성 인식을 말하며, 실험에서는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되는지 여부로 조작되었다. 정부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납세자들이 교환공평성을 느끼게 되면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납세순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환공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되면 오히려 납세순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교환 공평성 외에 세율인상은 실험에서 20%와 40%로 조작하였고 종속변수는 보고소득으로서 피험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서비스의 제공은 보고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보고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Allingham and Sandmo(1972)는 세율과 신고소득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세율의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대체효과(substitute effect)가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소득효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회피도가 감소하는 절대위험회피도(absolute risk aversion)를 가정할 때, 세율이 높아질수록 위험회피도가 감소하게 되어 탈세수준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대체효과에 따라 세율의 증가는 납세자가 소득을 과소신고 할 때 얻는 이익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탈세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실험연구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즉, 세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조세순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배수진과 심태섭(2011)이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가되어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Alm et al.(1995)은 세율이 증가할 때 보고소득이 증가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과 보고소득과의 관계는 납세자에게 다른 상황변수가 주어지거나 위험선호도, 공평성, 소득획득방법 등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서울과 세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Clausing(2007)은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최고법정법인세율과 각 나라의 조세구조, 기업 수익률 그리고 GDP대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OECD 평균 법인세율이 33%일 때 법인세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적정세율지점은 소규모 경제일수록 그리고 개방화가 더 많이 진행된 나라일수록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Alex and Hassett(2007)은 Clausing(2007)이 보여주었던 OECD 국가의 세율과 세율이 포물선을 그리는 형태를 재검증하였다. Clausing(2007)에서 사용한 변수 및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분석대상 기간을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확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기간별 Laffer curve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서울과 세수의 관계가 볼록한(convex)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재검증하였다. 또한 최고법정세율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 세목별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고법정법인세율의 적정세율지점은 국세와 지방세를 설명변수로 하였을 때보다 높은 편이었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세율의 하락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affer curve의 포물선 모양이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Laffer curve내 적정세율지점과 OECD 회원국 평균세율과의 차이가 점점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양상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Michael and Kotsogiannis(2004)은 영국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법개정에 의한 영향, 법인의 수익률 및 법인규모의 확장 그리고 서로 다른 거시 경제적 변수에 의한 법인세수 증감을 분석하였는데, 과세구간의 확대와 같은 세법개정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법개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법인수익 대비 법인세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거시 경제적 변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법인수익의 증가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산업을 부문별로 나누어 법인의 규모와 구성을 감안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금융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법인세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영국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금융산업의 성장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ltshuler et al.(2001)은 국가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세후 배당에 대한 외국자본의 탄력성을 높아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법인의 경제활동을 증가시켜 법인세수 증가의 결정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로 김유찬과 김진수

(2003), 이만우 등(2008) 및 이영(2006)은 법인세수의 법인세율에 대한 탄력성이 경제개방 정도에 의존하는지를 광범위한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경제개방에 따라 기업 활동이 국내 또는 국외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수의 증가정도가 경제개방에 따라 약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국내 연구로 오수정(2013)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개방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높여 법인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정세율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세율인상이 오히려 세수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경제 환경요인에 의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알 수 있다.³⁾

III. OECD 회원국의 법인세제에 대한 정책변화분석

1.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에 대한 정책변화분석

<표 1>은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39.13%이며 일본 36.99%, 프랑스 34.43%, 벨기에 33.99% 및 포르투갈 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3개 회원국 중 21번째로 24.2%이며, 네덜란드(25%)와 핀란드(24.5%)보다는 다소 낮으며, 슬로바키아(23%)와 영국(2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3) 이를 종합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 구	요 인	법인세율과 법인세수관계에 미치는 영향
Itshuler et al.(2001)	국가개방도, 외국인 직접투자	- 국가개방도 : 음(-) - 외국인직접투자 : 음(-)
Michael and Kotsogiannis(2004)	과세구간의 확대, 세법개정의 변화	- 두 요인의 영향은 미미함
이 영(2006)	경제개방도	- 경제개방도 : 음(-)
Clausing(2007)	경제규모, 개방화	- 소규모의 경제 : 음(-) - 개방화 : 음(-)
Alex and Hassett(2007)	국세·지방세 구분, 자본의 이동성	- 국세·지방세 구분 : 적정세율이 높아짐 - 자본의 이동성 : 음(-)
오수정(2013)	개방도	- 개방도 : 음(-)

〈표 1〉 최근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현황

(단위 : %)

연 도 국 가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United States	39.13	39.13	39.19	39.21	39.1	39.25	39.26	39.3	39.3	39.31
Japan	36.99	39.54	39.54	39.54	39.54	39.54	39.54	39.5	39.5	39.54
France	34.43	34.43	34.43	34.43	34.43	34.43	34.43	34.4	35	35.43
Belgium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4	34	33.99
Portugal	31.5	31.5	28.5	26.5	26.5	26.5	26.5	27.5	27.5	27.5
Germany	30.18	30.18	30.18	30.18	30.18	30.18	38.9	38.9	38.9	38.9
Australia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Mexico	30	30	30	30	28	28	28	29	30	33
Spain	30	30	30	30	30	30	32.5	35	35	35
Luxembourg	29.22	28.8	28.8	28.59	28.59	29.63	29.63	29.6	30.4	30.38
New Zealand	28	28	28	30	30	30	33	33	33	33
Norway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Italy	27.5	27.5	27.5	27.5	27.5	27.5	33	33	33	33
Canada	26.14	26.14	27.64	29.36	31.02	31.43	33.95	33.9	34.2	34.38
Greece	26	20	20	24	25	25	25	29	32	35
Austria	25	25	25	25	25	25	25	25	25	34
Denmark	25	25	25	25	25	25	25	28	28	30
Israel	25	25	24	25	26	27	29	31	34	35
Netherlands	25	25	25	25.5	25.5	25.5	25.5	29.6	31.5	34.5
Finland	24.5	24.5	26	26	26	26	26	26	26	29
Korea	24.2	24.2	24.2	24.2	24.2	27.5	27.5	27.5	27.5	29.7
Slovak Republic	23	19	19	19	19	19	19	19	19	19
United Kingdom	23	24	26	28	28	28	30	30	30	30
Sweden	22	26.3	26.3	26.3	26.3	28	28	28	28	28
Switzerland	21.15	21.17	21.17	21.17	21.17	21.17	21.32	21.3	21.3	24.1
Estonia	21	21	21	21	21	21	22	23	24	26
Chile	20	20	20	17	17	17	17	17	17	17
Iceland	20	20	20	18	15	15	18	18	18	18
Turkey	20	20	20	20	20	20	20	20	30	33
Czech Republic	19	19	19	19	20	21	24	24	26	28
Hungary	19	19	19	19	20	20	20	17.3	16	16
Poland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Slovenia	17	20	20	20	21	22	23	25	25	25
Ireland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주1) 자료출처 : www.oecd.org/tax(tax database)

<표 2>는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을 통한 정책변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본도 2004년과 2013년에 대폭 인하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5년과 2006년에 인하하였고, 포르투갈은 2004년과 2007년에 대폭 인하한 후 다시 2012년부터 인상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04년과 2008년에 대폭 인하하였고, 멕시코도 2007년까지 대폭 인하한 후 2010년에 인상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인하하였다.

이렇듯 OECD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경쟁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및 영국 등 최근 10년간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최근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정책변화 현황(전년도 대비 변화율)

(단위 : %)

연도 국 가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United States	—	-0.15	-0.05	0.28	-0.38	-0.03	-0.10	0.05	-0.08	-0.05
Japan	-6.45	—	—	—	—	—	—	—	—	-3.25
France	—	—	—	—	—	—	—	-1.49	-1.35	—
Belgium	—	—	—	—	—	—	—	—	—	—
Portugal	—	10.53	7.55	—	—	—	-3.64	—	—	-16.67
Germany	—	—	—	—	—	-22.42	—	—	—	-3.28
Australia	—	—	—	—	—	—	—	—	—	—
Mexico	—	—	—	7.14	—	—	-3.45	-3.33	-9.09	-2.94
Spain	—	—	—	—	—	-7.69	-7.14	—	—	—
Luxembourg	1.46	—	0.73	—	-3.51	—	—	-2.47	—	—
New Zealand	—	—	-6.67	—	—	-9.09	—	—	—	—
Norway	—	—	—	—	—	—	—	—	—	—
Italy	—	—	—	—	—	-16.67	—	—	—	-2.94
Canada	—	-5.43	-5.86	-5.35	-1.3	-7.42	0.06	-0.73	-0.58	-4.15
Greece	30.00	—	-16.67	-4.00	—	—	-13.79	-9.38	-8.57	—
Austria	—	—	—	—	—	—	—	—	-26.47	—
Denmark	—	—	—	—	—	—	-10.71	—	-6.67	—
Israel	—	4.17	-4.00	-3.85	-3.70	-6.9	-6.45	-8.82	-2.86	-2.78
Netherlands	—	—	-1.96	—	—	—	-13.85	-6.03	-8.7	—

〈표 2〉 최근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정책변화 현황(전년도 대비 변화율)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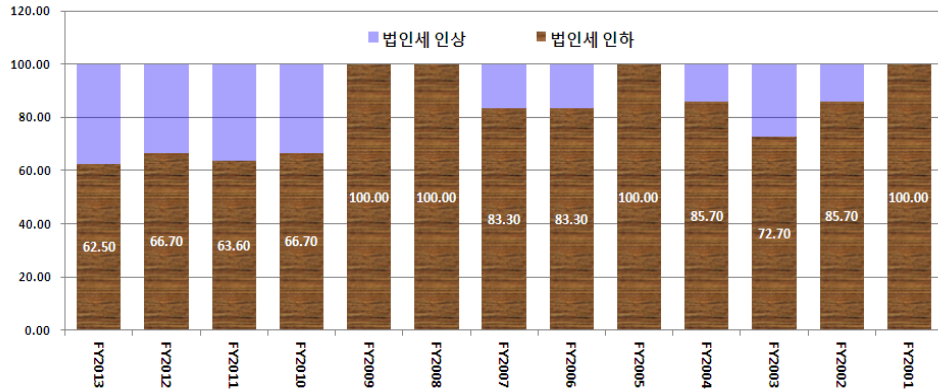
[illegible]

OECD 회원국들 중 법인세율을 통한 조세정책을 변경한 현황 <표 3>을 보면, 대체로 인상하기보다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4년에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수행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85.7%이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모두가 인하정책을 수행한 국가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은 정책변경 국가 중 62%~66%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국가였다.

〈표 3〉 최근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인상인하정책 현황

(단위 : 국가 수, %)

연 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법인세 정 책 변 화	전체	8 (30.8)	6 (21.4)	11 (47.8)	9 (36.0)	8 (30.8)	13 (61.9)	12 (54.5)	12 (54.5)	15 (78.9)	14 (70.0)
	인하 정책	5 (62.5)	4 (66.7)	7 (63.6)	6 (66.7)	8 (100)	13 (100)	10 (83.3)	10 (83.3)	15 (100)	12 (85.7)
	인상 정책	3 (37.5)	2 (33.3)	4 (36.4)	3 (33.3)	0 (0)	0 (0)	2 (16.7)	2 (16.7)	0 (0)	2 (14.3)



2. OECD 회원국의 법인세수 현황

<표 4>는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2011년 현재 OECD 회원국의 법인세수 평균은 2.703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노르웨이 11.044, 룩셈부르크 5.017에 이어 세 번째로 법인세수가 높다.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수 추세를 보면, 2008년 4.229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2011년은 4.0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2001년에는 2.823으로 최저치였으며, 2011년의 법인세수는 2001년 대비 41.87%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4> OECD 회원국의 법인세수 현황

(단위 : 법인세액/GDP)

구 분 \ 연 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OECD_average	2.703	2.898	2.823	3.462	3.753	3.756	3.553	3.242	3.078	3.097	3.164	3.446
Norway	11.044	10.096	9.115	12.136	11.017	12.755	11.662	9.8	7.988	8.135	8.874	8.923
Luxembourg	5.017	5.738	5.55	5.08	5.273	4.954	5.788	5.722	7.325	8.028	7.312	6.969
Korea	4.005	3.478	3.688	4.229	3.996	3.583	3.818	3.317	3.669	2.958	2.823	3.195
New Zealand	3.939	3.847	3.482	4.443	4.909	5.677	6.135	5.381	4.581	4.22	3.704	4.097
Israel	3.665	2.905	2.75	3.477	4.522	4.895	3.982	3.411	2.867	2.833	3.457	3.903
Czech Republic	3.477	3.397	3.565	4.231	4.695	4.605	4.352	4.411	4.44	4.157	3.855	3.356
Sweden	3.461	3.48	2.996	2.984	3.708	3.643	3.683	3.017	2.425	2.285	2.851	3.92
Japan	3.266	3.207	2.579	3.894	4.79	4.763	4.236	3.71	3.297	3.135	3.473	3.665
Canada	3.087	3.307	3.404	3.377	3.499	3.846	3.437	3.498	3.244	3.016	3.251	4.352
Belgium	2.984	2.696	2.503	3.339	3.485	3.528	3.305	3.087	2.865	3.031	3.114	3.203
Switzerland	2.892	2.876	3.015	3.123	2.98	2.902	2.372	2.284	2.366	2.5	2.877	2.591

〈표 4〉 OECD 회원국의 법인세수 현황 (계속)

구 분 \ 연 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United Kingdom	2.839	3.052	2.759	3.57	3.378	3.919	3.305	2.841	2.71	2.84	3.443	3.519
Denmark	2.779	2.737	2.311	3.288	3.782	4.343	3.922	3.161	2.903	2.872	2.786	3.258
Finland	2.721	2.55	2.028	3.485	3.871	3.387	3.334	3.518	3.403	4.169	4.189	5.895
Italy	2.686	2.829	3.094	3.696	3.793	3.397	2.78	2.805	2.758	3.098	3.487	2.896
United States	2.596	2.682	1.797	1.976	3.013	3.411	3.151	2.475	2.09	1.712	1.891	2.573
Slovak Republic	2.555	2.513	2.511	3.123	2.987	2.907	2.726	2.595	2.753	2.516	2.593	2.608
France	2.534	2.135	1.468	2.932	2.981	2.982	2.425	2.772	2.492	2.876	3.372	3.07
Ireland	2.25	2.528	2.422	2.818	3.366	3.749	3.367	3.543	3.657	3.658	3.508	3.67
Austria	2.205	1.927	1.696	2.459	2.417	2.172	2.21	2.249	2.155	2.191	3.043	1.994
Turkey	2.085	1.904	1.892	1.778	1.631	1.471	1.722	1.746	2.066	1.761	1.777	1.761
Spain	1.803	1.77	2.233	2.826	4.672	4.138	3.856	3.395	3.074	3.191	2.82	3.06
Germany	1.7	1.512	1.344	1.897	2.191	2.183	1.797	1.554	1.269	1.019	0.603	1.811
Slovenia	1.689	1.876	1.834	2.506	3.227	2.963	2.766	1.925	1.735	1.564	1.257	1.162
Iceland	1.586	0.952	1.772	1.921	2.488	2.404	1.979	1.031	1.24	0.884	1.039	1.222
Estonia	1.259	1.354	1.852	1.633	1.624	1.491	1.427	1.664	1.581	1.108	0.686	0.887
Hungary	1.205	1.233	2.26	2.637	2.804	2.344	2.115	2.171	2.208	2.316	2.33	2.236
Australia		4.754	4.811	5.897	6.863	6.443	5.816	5.52	5.013	4.992	4.389	6.145
Greece		2.396	2.456	2.522	2.56	2.723	3.316	3.026	2.936	3.412	3.399	4.172
Netherlands		2.171	2.024	3.165	3.245	3.315	3.77	3.053	2.808	3.309	3.926	4.004
Poland		1.995	2.29	2.709	2.752	2.397	2.483	2.22	1.803	2.045	1.87	2.429
Portugal		2.844	2.854	3.655	3.587	2.925	2.678	2.866	2.78	3.302	3.257	3.726

주1) 자료출처 : www.oecd.org/tax/tax_database

3. 명목 법인세율과 실제 조세부담의 관계

OECD 회원국들의 명목 법인세율(nominal corporate tax rate)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 법인세율과 법정 법인세율(statutory corporate tax rate)은 법인세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부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명목 법인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국가와 단순 명목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도출된 결과는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의 경제규모나 개방도 및 세수확보목적 등 경제상황이 실질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명목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비교는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현진권, 2013).⁴⁾

명목 법인세율이 기업의 실제 법인세부담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대리지표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목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계 하에서는 그 단일의 세율이 되는 반면 여러 세율 즉,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세율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 체계와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 간의 비교는 논리적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기반을 고려한 실제 법인세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계유효법인세율(marginal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유효세율 등을 사용해야 하나,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가장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측정치로 “GDP 대비 법인세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은 21번째이지만 이는 명목 법인세율인 반면, 법인세수 현황에서의 GDP 대비 법인세액은 3번째로 높아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명목 법인세율을 통해선 한국의 법인세율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명목 법인세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목 법인세율에 국한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진권(2013)에서 제시한 GDP 대비 법인세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이 변수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등의 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V. 연구설계와 분석결과

1. 연구설계

가.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개방도와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경제환경 하에서 합리적인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국제거래량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국제거래량은 해당 국가의 개방도와 관련된 지표로서 외국법인의 투자와 국내법인의 외국투자를 의미한

4)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2011.5.17.)에서는 “한국 법인세, 미·일보다 16%p 낮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명목 법인세율을 통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명목 최고세율 기준)은 24.2%(법인세의 10%인 주민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 34개국 평균치인 25.9%보다 1.7%포인트 낮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고 세율을 2% 포인트 낮추면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선진국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주요 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33.4%로, 우리나라보다 9.2%포인트나 높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다. 최근에 세계 각국들의 ‘법인세 인하경쟁’은 외국투자 유입의 활성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외국법인을 유치하고 자국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Laffer Curve에서 제시한 적정 세율까지 세율과 세수간 양(+)의 관련성에 개방도가 이들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외국법인의 유입으로 인해 오히려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수 확보목적이 복지재정 충당이 라고 한다면 이러한 복지재정 규모가 과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 확보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확보된 세수를 산업기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기보다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과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수를 증가시켜 세수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크기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연구자료

본 분석에서는 연구표본으로 OECD Tax Database에서 회원국 34개국의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법인세율, 법인세수, 수출액과 수입액, 정부 복지재정지출액 그리고 경제환경변수인 고용률,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로 구성된다. 일부 국가의 자료는 입력되어 있지 않아 결측(missing) 처리하였으며, 세계은행 WDI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로 보충하였다.

다. 연구모형

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Laffer(2004)의 모형을 통해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수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Clausing(2007), Altshuler et al.(2001) 및 오수정(2013)과 같이 경제사회적 여건을 통제한 후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비선형회귀분석(Non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Corporate\ Tax\ Revenue / GDP_{i,t} = \alpha_1 + \beta_1 Corporate\ Tax\ Rate_{i,t} + \beta_2 Corporate\ Tax\ Rate_{i,t}^2 + \epsilon_{i,t} \quad (1)$$

$$\begin{aligned} Corporate\ Tax\ Revenue / GDP_{i,t} = & \alpha_1 + \beta_1 Corporate\ Tax\ Rate_{i,t} + \beta_2 Corporate\ Tax\ Rate_{i,t}^2 \\ & + \beta_3 Open\ Trade / GDP_{i,t} + \beta_4 Welfare / GDP_{i,t} + \beta_5 Growth_{i,t} \\ & + \beta_6 Unemploy_{i,t} + \epsilon_{i,t} \end{aligned} \quad (2)$$

식(1)과 식(2)에서 종속변수($CorporateTaxRevenue/GDP$)는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법인세율변수($CorporateTaxRate$)는 지방세를 포함한 국세인 최고 명목 법인세율로 정의하였고, 개방도($OpenTrade/GDP$)는 GDP 대비 수입·수출액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복지재정지출($Welfare/GDP$)은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액으로 정의하였으며,⁵⁾ 경제성장($Growth$)은 1인당 GDP(2000년 기준으로 표준화함)를 t연도의 $\log(1인당\ GDP)$ 에서 t-1연도의 $\log(1인당\ GDP)$ 를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실업률($Unemploy$)은 OECD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실업률로 정의하였다.

2. 분석결과

가. 기술통계량

<표 5>에서 GDP 대비 법인세수는 평균 2.914%로 0.27%에서 최대 12.76%로 분포하였으며, 명목 법인세율은 평균 35%로 12.5%에서 61.7%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 연구표본의 기초통계량

변 수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사 분위수	중위값	3 사 분위수	최대값
법인세수 <i>CorporateTaxRevenue/GDP</i>	891	2.914	1.571	0.267	1.88	2.691	3.487	12.755
명목 법인세율 <i>CorporateTaxRate</i>	850	35	10.3	12.5	28	34	40.5	61.7
개방도 <i>OpenTrade</i>	855	1.661	14.425	0.003	0.068	0.145	0.411	256
복지재정지출액 <i>Welfare</i>	149	22.216	2.502	18.506	19.861	22.975	23.765	28.137
경제성장률 <i>Growth</i>	757	2.629	3.012	-14.1	1.3	2.8	4.2	12.3
실업률 <i>Unemploy</i>	769	7.445	3.648	1.6	4.7	7.1	9.3	21.6
<i>GDP</i>	858	76.678	27.909	0.005	61.624	81.975	97.674	148.83

5) 법인세수는 일반회계로서 본 연구에서의 법인세수의 용도가 복지재정 충당이라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 중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마련 목적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중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수용도가 복지재정재원”이라는 간접적인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개방도(openness)는 평균 1.66로 0.003부터 256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복지재정지출액은 평균 22.2%로 18.5%에서 28.14%까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및 GDP의 평균은 각각 2.63, 7.45 및 76.68%로 나타나고 있다.

나. 상관관계 분석

<표 6>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및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부호를 나타낸다. 반면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11863 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법인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CorporateTaxRate*과 *CorporateTaxRevenue*의 상관관계

구 분		상관계수	p-값
1980년대 초반	1981-1985	0.04062	0.6959
1980년대 후반	1986-1990	-0.16501	0.1044
1990년대 초반	1991-1995	0.27201***	0.0029
1990년대 후반	1996-2000	0.01417	0.8719
2000년대 전반	2001-2005	0.06641	0.4041
2000년대 후반	2006-2010	0.22811***	0.0037
최 근	2007-2011	0.21024***	0.0089
전 체	1981-2011	-0.11863***	0.0008

주1) *, **, ***는 1%, 5% 및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Clausing(2007)과 Laffer(2004)가 주장한 비선형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제도와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최근 및 전체표본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위 <표 6>과 동일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비선형관계를 나타낼 경우,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야 함에도 본 결과에서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전체표본에서는 예상과 동일하게 음(-)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Laffer Curve상의 적정법인세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체로 선형관계와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과 법인세율 제도를 포함한 비선형회귀 모형이 적합한 분석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CorporateTaxRate^2$ 과 $CorporateTaxRevenue$ 의 상관관계

구 분		상관계수	p-값
1980년대 초반	1981-1985	0.00776	0.9405
1980년대 후반	1986-1990	-0.17890*	0.0780
1990년대 초반	1991-1995	0.24923***	0.0065
1990년대 후반	1996-2000	-0.02837	0.7468
2000년대 전반	2001-2005	0.03441	0.6658
2000년대 후반	2006-2010	0.19474**	0.0136
최 근	2007-2011	0.1712**	0.0308
전 체	1981-2011	-0.14947***	0.0001

주) *, **, ***는 1%, 5% 및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다. 회귀분석

(1) 기간별 회귀분석 결과

Clausing(2007)과 Laffer(2004)의 모형과 같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비선형관계인지를 확인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기간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 $CorporateTaxRevenue/GDP$								
구 분	(1) 1981 -1985	(2) 1986 -1990	(3) 1991 -1995	(4) 1996 -2000	(5) 2001 -2005	(6) 2006 -2010	(7) 2007 -2011	(8) 1981 -2011
<i>Intercept</i>	-10.069** (3.931)	-0.477 (2.643)	-2.195 (1.949)	-0.691 (1.374)	-2.043 (1.852)	-2.938 (1.831)	-3.095* (1.815)	0.968* (0.513)
<i>CorporateTaxRate</i>	0.530*** (0.168)	0.157 (0.121)	0.211** (0.100)	0.218*** (0.075)	0.377*** (0.133)	0.425*** (0.139)	0.435*** (0.138)	0.133*** (0.029)
$CorporateTaxRate^2$	-0.006*** (0.002)	-0.002 (0.001)	-0.002* (0.001)	-0.003*** (0.001)	-0.006*** (0.002)	-0.007*** (0.003)	-0.007*** (0.003)	-0.002*** (0.001)
R^2	0.098	0.049	0.098	0.063	0.050	0.092	0.090	0.049
표본수	95	98	118	132	160	160	154	789

주1)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주2) ***, **, *은 1%, 5% 및 10%유의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먼저 1980년 후반연도의 표본(2)에서는 법인세율(*CorporateTaxRate*)이나 법인세율 제곱(*CorporateTaxRate*²)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나머지 표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즉,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에 양(+)의 계수를 보여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법인세율 제곱과 법인세수 간에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볼록한(convex) 형태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관계로 해석되며, 이는 Laffer Curve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변수의 관계에 개방도와 복지재정지출의 크기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개방도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개방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부터 (4)까지 법인세율(*CorporateTaxRate*) 모두가 법인세수(*CorporateTaxRevenue/GDP*)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계수를 보이며, 법인세율과 개방도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는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제의 개방도가 진행될수록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폐쇄경제국가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적정세율까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개방경제국가에서는 이러한 양(+)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Clausing, 2007).⁶⁾ 즉 저세율 국가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저세율 국가의 법인세수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세율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법인들이 저세율 국가를 찾아 외국으로 진출하는 등 법인세원의 범위가 작아져 오히려 법인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개방도(*OpenTrade/GDP*)와 법인세수(*CorporateTaxRevenue/GDP*)의 관계 또한 양(+)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의 무역거래량이 많을수록 법인세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개방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여건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Growth*)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업률(*Unempty*)은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제시한 오수정(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GDP를 2000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지만, 오수정(2013)의 분석결과와는 반대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법인들의 투자위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과 법인세수의 관계는 음(-)의 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6) Clausing(2007)에 의하면 국가경제의 개방이 확대된 개방국가는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보다 많은 법인세수를 거둘 수 있으며, 높은 법인세율은 오히려 적은 법인세수를 거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9〉 개방도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Dependent Variable : <i>CorporateTaxRevenue/GDP</i>				
구 분	(1)	(2)	(3)	(4)
<i>Intercept</i>	1.772*** (0.625)	4.250*** (0.363)	0.744 (0.722)	1.340 (0.902)
<i>CorporateTaxRate</i>	0.186*** (0.036)	0.016** (0.007)	0.158*** (0.039)	0.221*** (0.055)
<i>CorporateTaxRate</i> ²	-0.003*** (0.001)		-0.003*** (0.001)	-0.031*** (0.008)
<i>CorporateTaxRate</i> × <i>OpenTrade/GDP</i>		-0.047** (0.023)	-0.164*** (0.047)	-0.059** (0.016)
<i>CorporateTaxRate</i> ² × <i>OpenTrade/GDP</i>			0.002** (0.001)	0.001 (0.002)
<i>OpenTrade/GDP</i>	0.088*** (0.146)	0.922** (0.375)		0.280** (0.129)
<i>Growth</i>	0.005 (0.0226)	0.014 (0.023)		0.003 (0.023)
<i>Unemploy</i>	-0.165*** (0.018)	-0.172*** (0.018)		-0.165*** (0.018)
R ²	0.221	0.186	0.163	0.223
표본수	515	515	727	515

주1)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주2) ***, **, *은 1%, 5% 및 10%유의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3) 복지재정지출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복지재정지출($Welfare_t/GDP_t$)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분석은 법인세수를 당해 연도 복지재정의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⁷⁾

법인세율은 (1)열부터 (4)열까지 모두 양(+)의 계수를 보이며, (2)열부터 (4)열까지의 법인세율과 복지재정지출의 상호작용변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수의 용도를 당해 연도의 복지재정지출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 양(+)의 관계를 약화

7) 물론, 법인세수와 당해 연도 복지재정지출액은 내생성(endogeneity)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바꾸더라도 법인세수의 용도에 따른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관찰하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차기 연도의 복지재정지출액을 통해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수를 사회·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원 범위를 넓혀 법인세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지만, 법인세수를 복지재정지출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법인세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10〉 복지재정지출($Welfare_i/GDP_i$)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Dependent Variable : $CorporateTaxRevenue/GDP$				
구 분	(1)	(2)	(3)	(4)
<i>Intercept</i>	4.998 (5.633)	3.944*** (0.924)	4.194** (1.777)	4.162*** (1.541)
<i>CorporateTaxRate</i>	0.460** (0.216)	0.848*** (0.276)	0.734** (0.321)	0.823** (0.353)
<i>CorporateTaxRate</i> ²	-0.008** (0.003)		-0.095* (0.050)	-0.107** (0.05)
<i>CorporateTaxRate</i> × <i>Welfare/GDP</i>		-0.035*** (0.012)	-0.323** (0.150)	-0.365** (0.154)
<i>CorporateTaxRate</i> ² × <i>Welfare/GDP</i>			-0.004** (0.002)	-0.004** (0.002)
<i>Welfare/GDP</i>	0.407*** (0.063)	1.576*** (0.419)	1.270*** (0.346)	1.712*** (0.636)
<i>Growth</i>	-0.144 (0.143)	-0.025 (0.137)		-0.102 (0.138)
<i>Unemploy</i>	-0.208** (0.098)	-0.186** (0.090)		-0.216** (0.087)
R ²	0.649	0.704	0.697	0.752
표본수	183			

주1)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주2) ***, **, *은 1%, 5% 및 10%유의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여기서의 시사점은 복지재원확충 차원에서 법인세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단기적인 법인세수 증대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오히려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정책은 당해 법인세수의 용도에 따라 오히려 의도한 정책목표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법인들은 국제거래를 통한 수익비중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금융의 위축,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팽배로 인하여 법인들

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의 용도가 성장을 위한 지출보다 복지재원용으로 사용될 경우 장기적인 국내 경제전망은 밝지 않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다. 따라서 많은 국내 법인들은 저세율, 저비용 국가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나머지 경제상황변수인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표 9>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11>은 당해 연도의 복지재정지출이 아닌 차기 연도의 복지재정지출($Welfare_{t+1}/GDP_{t+1}$) 변수로 측정하여 복지재정지출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수가 차기 연도의 복지재정지출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표 11> 복지재정지출($Welfare_{t+1}/GDP_{t+1}$)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Dependent Variable : $CorporateTaxRevenue/GDP$		
구 분	(1)	(2)
<i>Intercept</i>	3.697*** (0.594)	3.337*** (1.040)
<i>CorporateTaxRate</i>	0.694** (0.174)	0.712*** (0.179)
<i>CorporateTaxRate</i> ²	-0.008** (0.003)	-0.007** (0.002)
<i>CorporateTaxRate</i> × <i>Welfare/GDP</i>	-0.041*** (0.006)	-0.044*** (0.006)
<i>CorporateTaxRate</i> ² × <i>Welfare/GDP</i>	-0.402** (0.197)	-0.388** (0.174)
<i>Welfare/GDP</i>	1.285*** (0.400)	1.707*** (0.590)
<i>Growth</i>		-0.024 (0.133)
<i>Unemploy</i>		-0.186** (0.091)
R ²	0.691	0.710
표본수	149	

주1)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주2) ***, **, *은 1%, 5% 및 10%유의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법인세율(*CorporateTaxRate*)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계수를 나타내며, 법인세율과 차기 복지재정지출의 상호작용변수(*CorporateTaxRate* × *Welfare/GDP*)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해 연도의 법인세수 용도를 차기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차기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수를 높이려고 법인세율 인상정책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정책으로 인하여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행 복지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세수확보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세수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향후 국내 경제여건을 악화시켜 오히려 법인세수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V.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정책의 타당성 검토

1. 이론적 근거를 통한 세율과 세수의 관계

세율과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관계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연구에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세수효과는 탈세나 체납으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순응도는 세수효과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실험상황에서의 납세자의 행태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세율을 높일 경우, 조세순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법인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오히려 법인들로 하여금 탈세나 체납 등 조세순응도를 낮추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는 Laffer Curve와 같이, 적정세율까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이들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종전 이론적 논거들은 세율을 인상시키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다국적 거래환경, 거시경제 요인 및 외국자본거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반드시 세율인상이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 OECD 회원국의 자료를 통한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추이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법인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법인세수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04년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9.24%로 GDP 대비 법인세수는 3.24였으나 2008년에 25.97%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지만 GDP대비 법인세수는 3.46으로 세율인하가 오히려 세수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인하경쟁 하에서도 세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명목 법인세율을 비교하거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법

인세율을 인상시킨다면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29.7%에서 27.5%로 2.2%p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는 3.317에서 3.818로 0.501만큼 증가하였고, 2006년 3.583, 2007년 3.996 그리고 2008년 최고치인 4.22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반드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2〉 OECD 평균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추이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세율	한 국	29.7	27.5	27.5	27.5	27.5	24.2	24.2	24.2	24.2	24.2
	OECD 평 균	29.24	28.16	27.5	26.98	25.97	25.69	25.64	25.52	25.49	25.48
GDP 대비 법인세수	한 국	3.317	3.818	3.583	3.996	4.229	3.688	3.478	4.005	—	—
	OECD 평 균	3.24	3.55	3.75	3.75	3.46	2.82	2.89	3.00	—	—

3. 국가개방도와 세수의 용도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GDP 대비 대외무역거래규모로 측정한 국가개방도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비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관찰하였다. 즉 대외무역거래량이 증가할수록 법인세율의 인상이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한 현재의 국제경제상황 하에서 법인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조세정책은 오히려 법인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자국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법인세원 자체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정책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크기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실증결과를 확인하였다. 세수의 용도가 사회경제기반 확충이나 투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세수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도가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이라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세수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수확보정책의 일환으로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타 세목의 개편을 통한 세수확보가 부작용이나 파생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주장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정책은 자칫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⁸⁾

VI.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수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한다면 이는 폐쇄경제 하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현 개방경제상황을 고려한 대외 무역거래와 외국자본 및 국내법인의 해외유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단기적인 세수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이를 근거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개별국가의 경제규모나 개방도 등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하고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고려한다면 논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GDP 대비 법인세수를 본다면 한국은 OECD 상위 3위로 상당히 높다. 이는 단순 명목 법인세율은 낮지만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OECD의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OECD 회원국들이 현재까지도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에도 유독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그만큼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이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위축될 것이며 또한 국내 법인들의 해외유출로 이어져, 결국 법인세원의 축소로 인해 법인세수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는 더욱 침체기에 빠져들 것이다.

넷째, 현 정부의 세수확보의 주된 목적이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확보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인 경제위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확보된 법인세수의 용도가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 논리나 명목 법인세율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국내 경제상황과 OECD 회원국들의 동향을 검토하고, 과연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8) 한편,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확보된 세수를 통해 사회복지재정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복지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거나 국민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법인세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3.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도자료.
- 김유찬. 2003.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 한국세무학회 발표자료.
- 김유찬·김진수. 2003.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의 인하는 필요한가?”,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 85-107.
- 김진태·신용준. 2013. “세율 변화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역사적 고찰”, 경영사학 제28집 제1호(통권 65호) : 199-220.
- 김현숙. 2004.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월간재정포럼 : 6-30.
- 배수진·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215-273.
- 이만우·김진배·양대천. 2008.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5권 제3호 : 161-189.
- 이운재·김경표. 2004.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111-128.
- 이영. 2006.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179-205.
- 오수정. 2013. “법인세율과 개방도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경제연구 제34권 제1권 : 85-105.
- 한겨레신문(2011.5.17.) “한국 법인세, 미·일보다 16%p 낮아”
- 현진권. 2013.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KERI Brief(13-06).
- Abel A. B. 1980. Empirical Investment Equations :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2 : 39-91.
- Alex, B., and K. A. Hassett. 2007. Revenue-maximizing corporate income taxes : the Laffer Curve in OECD countri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orking Paper.
- Allingham, M. G., and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s 1 : 323-338.
- Alm, J., Sanchez, I., and De Juan, A. 1995.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in tax compliance. Kyklos. The Accounting Review 66 : 3-18.
- Altshuler, R., G. Harry, and T. S., Newlon. 2001. Has U.S. Investment Become More Sensitive to Tax Rates? in : James R. Hines, Jr. (editor),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9-32.
- Boylan, S. J., and P. J. Frischmann. 2006.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ole of Tax Complexity in Investment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8

(2) : 69 – 88.

Boylan, S. J., and G. B. Sprinkle. 200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Compliance : The Effect of Earned vs. Endowed Incom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1) : 75 – 90.

Clausing, Kimberly A. 2007. *Corporate tax revenues in OECD countries*, Springer.

Devereux, Michael P., Rachel Griffith and Alexander Klemm. 2004. *Why has the UK Corporation tax raised so much revenue?*,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Djankov, S., T. Granser, C. McLiesh, R. Ramlho and A. Shleifer. 2008.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NBER Working Paper No. 13756, NBER.

Eisner, R., and R. H. Strotz. 1963. *Determinants of Business Investment, in Impacts of Monetary Policy, studies prepared for the Commission on Money and Credit*, Prentice – Hall.

Hayashi, F. 1982. Tobin's Marginal q and Average q : A Neoclassical Interpretation, *Econometrics* 50 : 213 – 224.

Kim, C., J. Evans III, and D. Moser, 2005. Economic and Equity Effects on Tax Reporting Decision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30 : 609 – 625.

Laffer, Arthur B. 1979. Statement Prepared for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May 20, Reprinted in *The Economics of the Tax Revolt : A Reader* : Arthur B. Laffer and Jan P. Seymour(ed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75 – 79.

Laffer, Arthur B. 2004. *The Laffer curve : Past, Present, and Future*, The Heritage Foundation, No. 1765.

Lucas Jr., R. E. 1967. Adjustment Cost and the Theory of supp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 321 – 334.

Michael K. J., and C. Kotsogiannis. 2004. Tax competition in federations and the welfare consequences of decentraliz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6(3) : 397 – 407.

Summer, L. H. 1981. *Tax Policy and Corporate Investment : A q – theory Approa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 67 – 127.

www.oecd.org/tax/tax_database

An Analysis of Validity of Policy for Securing Tax Revenue Using Corporate Tax Rate*

Won-Seok Choi** · Sung-Man Yo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economic opening and the use of welfare finance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corporate tax rate and corporation tax revenue,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about the policy to secure the tax revenue through the corporate tax rate impression. Many literature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corporation tax revenue by using OECD data and the transition of the corporate tax rate and corporation tax revenue was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increasing the corporate tax rate to the purpose for securing the corporation tax revenue, the tax compliance of the corporations, that is the taxpayer, confirmed to relatively be decreased. When performing the policy to secure the tax revenue through the corporate tax rate impression, this suggests the point that the side effect hindering the tax revenue security policy including the tax evasion of the corporations or delinquency in payment, and etc. can be generated.

Second, it could confirm that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corporation tax revenue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 that the corporate tax rate impression analyze soon whether it was with the increase in the corporation tax revenue or not economic conditions in society, and etc.

Third, recently the result of analyze the transition of the nominal corporate tax rate of the OECD member country and corporation tax revenue to GDP could observe the tendency that the average continued of corporate tax rate is decreased about ten years from the inside atmosphere in which the corporation tax lowering competition is intense.

Forth, it confirmed that regression analysis result and openness of the national economy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corporation tax revenu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2 sabbatical year research gra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and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Finally, when the use of the secured tax revenue was used as the asset of the welfare financial expenses not being society and economy-based investment, the analyzed resul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corporation tax revenue will become weak was confirmed. In the recursive structure called “the increase in the profit enhancement → corporation tax revenue of the corporate tax rate impression → the corporation tax revenue increase → the economic foundation expansion → corporation”, the personal appearance of the corporate tax rate is with the increase in the short-term long-term corporation tax revenue if this is the expansion of the economic foundation in which the use of the corporation tax revenue will become the activator role of the profit enhancement of the corporation.

〈Key words〉 Corporate Tax Rate, Corporate Tax Revenue, Policy for Securing Tax Revenue, Openness of Economy